

●문화재청공고 제2021-356호

문화재 등록 예고

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‘순천 동남사 사진기 및 확대기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.

2021년 10월 13일

문화재청장

1. 공 고 명 : 문화재 등록 예고

2. 예고 내용

명칭	수량	규격 (세로×가로, cm)	제작연대	소유자 및 소재지
순천 동남사 사진기 및 확대기	2건 13점	<사진기> 11점 (앞)13×11.5cm (뒤)22.8×20.5cm 등 <확대기> 2점 (기둥~바닥)79.5cm, (확대기)63cm 등	1950~ 1970년대	○○○ 전라남도 순천시 중안로

가. 대상문화재

나. 등록 예고 사유

○ 순천 동남사 사진기 및 확대기

- ‘순천 동남사 사진기 및 확대기’는 순천에서 설립된 동남사(1952~1976)가 제작·판매한 사진기와 확대기 등으로 총 2건 13점\*이다. 1948년부터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와 국산장려운동이 전개되면서, 수입에 의존하던 사진기의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의 기술로 제작된 것으로, 근대 사진기 제조업 발달사를 파악할 수 있는 등록 가치가 충분한 유물이다.

\* 2건 13점 : 사진기 등 11점(사진기 4점, 필름 홀더 3점, 삼각대 2점, 스탠드 1점, 셔터 1점), 확대기 2점

3. 등록 예고일 : 관보 공고일

4. 등록예고 기간 :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

5. 의견제출

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(異見)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

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기재 사항

-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제출 방법 : 우편·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「문화재청 홈페이지(<http://www.cha.go.kr>) / 새 소식 / 문화재지정예고」에 등재

다. 연 락 처

- 전 화 : (042)481-4891, 4892
- 팩 스 : (042)481-4899
- 주 소 : (우 302-701)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